**Offenders Beware!**

**Child Sex tourism case studies**

**-ECPAT-**

**3. 본국에서 처벌받은 사례**

아동 성관광의 국제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몇몇 송출국은 약자를 성착취하는 가해자가 해외에서 아이들을 학대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역외적용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외국인이 저지른 성적 학대에 대한 기소는, 학대가 일어난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범죄가 아닐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범죄도 본국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다.

역외적용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아동 성관광에 주어지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불행하게도 용의자들은 알려지지 않거나 무죄로 풀려나게 된다. 역외적용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 해외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추가적인 비용, 그리고 아동 희생자와 아동 목격자들이 느끼는 압박 등은 수사에 많은 문제가 된다. 또한 외국인 경찰이 현지 경찰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해자의 나라에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지 경찰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때도 있다. 다음의 사례들에서는 현지 경찰이 송출국의 경찰에게 협조를 하지만, 예를 들어 부록에 나와 있는 감비아의 경우에는 현지 경찰이 네덜란드 경찰에게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다.

**필리핀에서의 네덜란드인**

이혼 경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43세의 Jan van Schelling은 필리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미성년의 여자아이들을 호텔방으로 오게 했다. 그는 그의 행동을 포르노 사진, 포르노 영상으로 촬영하여 네덜란드로 가지고 돌아 왔다.

Van Schelling에 대한 수사는 그가 사진을 현상하여 보냈던 현지 네덜란드 약사에 의해서 1996년 2월 시작되었다. 약사는 네덜란드 경찰에게 그 사진들이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에 경찰이 집을 수색하자 발가벗은 여자아이들의 영상, 사진, 포스터를 포함한 추가적인 음란물이 발견되었다. 그 중 많은 음란물들이 네덜란드는 물론 필리핀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된 성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었다. 이는 Van Schelling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12살 이하의 어린 성매매 아이들과 불법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는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

네덜란드 연방수사국은 피해자를 밝히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파견되었다. 이는 네덜란드와 필리핀 경찰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 경찰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활동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활동가는 리타라는 한 여자아이를 알아보았다. 경찰이 한 인터뷰에 따르면 리타는 Van Schelling과 오랄 섹스를 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진술로 네덜란드에서는 고소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네덜란드 경찰관 두 명이 마닐라에서 리타와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는 TV와 비디오 송신 장치가 설치된 방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하기 전 리타는 공식적인 고소인인 어머니와 함께 동행했다.

1996년 10월, 헤이그에 있는 지방 법원에서 Van Schelling에게 필리핀에서 16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강간하고 그 외 각종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5년 형을 선고 받았다(최고 8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네덜란드 법정은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Van Schelling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주어진 경제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한 방어-ECPAT 네덜란드 지부는 네덜란드와 필리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절차는 양 나라 간의 다른 법적 제도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제 아이를 가진 젊은 엄마가 된 리타는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고통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현재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당할 위험이 있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돕고 싶어한다.

2004년 9월, Van Schelling은 민사 소송으로 리타에게 3천 유로에 달하는 돈을 지급해야 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법정이 아동 성관광에 의한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리타의 어머니는 딸이 성적 학대를 당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아 100 유로를 받았다. Van Schelling은 파산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위한 방어-ECPAT에서 리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돈을 지불했다. 이러한 성과는 아동 성관광에 맞서는 시초가 되어, 현재에는 실형 선고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케냐에서의 미국인**

미국인 Lester Christian Weber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포르노를 제작할 의도를 가지고 케냐로 여행을 떠났다. 미국 당국은 웨버가 미국으로 돌아 왔을 때 그가 아동 포르노와 관련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케냐 당국과 협조하여 조사를 마친 후에 웨버는 체포되었다. 2005년 웨버는 미국법 상 가장 긴 형을 선고 받는 혐의 중의 하나인 아동 성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5년 동안 형을 살아야 했다.

**4. 목적국에서 처벌받은 사례**

아동 성학대로 이어지는 아동 성관광은 처벌을 잘 받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 경찰의 수용 능력으로는 고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 성관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어떤 아동 성관광객은 체포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드물다. 아래의 사례들은, 성관광객이 목적국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을 때에는 적어도 약 10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됨을 보여준다.

**캄보디아에서의 벨기에인**

2006년, 이미 자신의 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적이 있었던 한 벨기에 사람이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아동 성학대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프놈펜 게스트 하우스에서 13살의 소년과 발가벗은 채로 발견되었다. 소년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준다는 조건 하에 3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었다. 벨기에에서 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캄보디아에서 음란죄로 재판을 받았다. 이로써 캄보디아가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데에 맞서 국내법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었다. 벨기에인은 18년 형을 받았다. ㅡ 이는 성범죄의 최대형량이다.

**에스토니아에서의 핀란드인**

1999년 한 핀란드 사람이 소아성애자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에스토니아로 갔다. 그는 공공 장소에서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부모의 보살핌을 그리워하거나 결손가정에서 자란 거리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먼저 그는 아이들에게 음식, 과자, 사탕 등을 사주었다. 그런 후에 아이들을 아파트로 유인해서 은밀한 부위를 만지며 애무하게 하고, 동시에 그 자신도 아이들을 애무하곤 했다.

1999년 말에 아동 성학대에 대한 범죄 수사가 시작되었다. 핀란드인은 14살 아동과 7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해 왔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에스토니아를 떠나 핀란드로 돌아갔다. 수사 절차는 두 나라가 법 집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2004년 2월 핀란드인은 1999년 타르토와 에스토니아에서 7건의 성적 학대와 2건의 성적 학대 시도로 유죄를 인정받아 2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3월에는 이름을 바꾼 그 핀란드인이 에스토니아에서 아동 포르노 범죄로 또다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형이 끝난 후 그는 핀란드로 송환되었다.

**캄보디아에서의 이탈리아인**

2001년 이탈리아 출신의 Alain Filippo Berruti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4명의 캄보디아 남자아이들과 벌거벗은 채 체포되었다. 체포되었을 때 그는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절했고, 재판이 조용하게 진행되기를, 그리고 관대한 판결을 받기를 바랐다. 1971년 11월 밀란에서 태어난 Berruti는 캄보디아에 관광차 들렀다. 6일 후 경찰은 Tonle Sap 호수에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를 찾아냈다. 그들은 모두 나체인 상태였다. 체포되었을 때 그는 즉시 아이들과의 성적 접촉을 시인했지만, (Berruti의 주장으로는)아이들이 ‘거리 매춘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동의한 것이며 아이들에게 각각 3달러의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후에 지방 법원의 Nob Sophon 판사는 Berruti에게 10년 형을 선고하고 성추행을 당한 아이들에게 각각 250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캄보디아에서의 네덜란드인**

2004년 4월 네덜란드 출신의 Rene Paul Martin Aubel(48세)은 프놈펜의 호텔에서 13살의 벌거벗은 두 명의 소년들과 함께 있다 체포되었다. 그는 15세 이하인 7명의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그들의 사진을 찍었다. 그는 자신과 섹스하는 데 10유로를 주었다. 그는 음란죄와 포르노 사진을 찍은 죄로 기소되었다. 2004년 8월 캄보디아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검사는 항소했고 Aubel은 구금되었다. 항소심에서 Aubel은 10년 형과 피해자들 각각에게 256 유로를 지불할 것을 선고 받았다.

**니카라과에서의 이탈리아인**

Don Marco Dessi(59세)는 Villamassargia에서 태어나 니카라과의 치난데가 주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였다. 그는 ‘Betania’라 불리는 커다란 인도주의적 미션을 시작한 것으로 그 지역에서 꽤 유명했다. 하지만 2006년 치난데가의 성가대 아이들은 Rock no War(Don Dessi가 함께 일한 시민단체)에 자신들이 목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Rock no War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대변할 ECPAT 이탈리아 지부의 의장 Marco Scarpati 변호사를 선임했다. 증거에는 아이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나체를 찍은 사진 1400여 장, 니카라과에서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변질시키고 겁을 주려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기록 등이 있었다. Don Dessi는 1심에서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2심과 3심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2009년 기준).

**5. 도망친 가해자의 사례**

이러한 사례들은 아동 성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의 행적을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피고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그는 도망칠 길을 찾을 것이다. 체포된 용의자의 대부분이 뇌물을 써서 출국을 하고, 그들이 도주함으로써 아이들이 성적 착취를 당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태국에서의 싱가포르인**

Temasek 기술 대학에서 응용과학을 가르치던 싱가포르 출신의 Darwis Rianto Lim(31세)은, 2005년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인 소년들과의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미국 출입관리국 특별 요원과 호주 인터폴은 그 선생이 인터넷으로 태국 소년들과의 성관계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감시했다. 이들은 용의자를 잡기 위한 함정수사로 포주 행세를 하는 잠복경찰관들을 투입했음을 태국의 연방수사국에 알렸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Lim은 12살에서 16살 되는 남자아이들과의 섹스에 200달러를 지불한다는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렸다. Lim은 3명의 소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16살 소년을 데리러 왔고, 잠복 경찰인 포주에게 8000 바트(235 달러)를 지불하는 순간 체포되었다.

2005년 6월 Lim의 변호사는 방콕 형사법원에 출두하여, 몇 번을 시도하였지만 Lim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Lim은 또한 2005년 7월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이 발부되었고 Lim의 어머니가 낸 보석금 300,000 바트(8,800 달러)는 취소되었다. Lim은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태국을 떠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태국에서의 이탈리아인**

Varese 근처의 Tradate에서 태어난 Roberto Rossinelli(49세)는 로마 근처의 Torvaianica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태국과 남미에서 14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최소 12명)을 성추행하고 고문하였으며 이를 영상으로 찍었다. 찍은 영상은 돈을 받고 팔았다. 그는 2달 동안 여행을 한 후 이탈리아에 돌아와 테이프를 파는 식의 행위를 3년 동안을 지속했다. 이것은 그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Carabinieri(이탈리아 경찰 지부)는 1999년 5월 수천 장의 사진과 수백 개의 영상을 몰수하고 그를 체포하였다. Rossinelli는 이탈리아 법정에서 14년의 실형과 65,000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Italian Law 269/1998에 의해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였고, 이는 ECPAT 이탈리아 지부의 도움 덕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순간에 이미 Rossinelli는 도망 중이었다: 그는 여자친구인 콜롬비아 출신의 매춘부 Claudia Patricia Astudillo Martinez(30세)와 도주해 버렸다.

**6. 언론이 결정적으로 개입한 사례**

많은 목적국과 출신국에서 아동 성관광은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한다. 목적국의 정부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아동 성관광을 포함하여) 성매매를 통하여 돈을 벌고 있다. 따라서 몇몇 목적국은 아동 성관광을 몰아내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송출국 당국은 역외적용법률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는 데 회의적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정부가 아동 성 범죄자를 체포하고 단죄할 준비를 하게 됨을 보여준다.

**태국에서의 이탈리아인**

Giorgio S.(59세) 사건은, 이탈리아 언론 ‘Le iene(Hyenas)’의 기자가 소아성애자로 가장하여 그에게 접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기자는 카메라를 숨겨 놓고 그와 몰래 인터뷰했고, 2005년 8월 이를 황금 시간대에 방송했다. 이 영상에서 S.가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7세에서 15세의 소녀들을 폭행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S.는 야영지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1년에 두 세달만 이탈리아에서 살았고 나머지 9~10개월 가량은 태국에서 지냈다. 그는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노트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점수가 기입되어 있었다. S.는 태국에 정착하여 아동 성관광을 원하는 이탈리아 남자들을 위한 작고 사적인 여행업체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대부분 불리한 진술들을 했고(“여기 어린이들을 섹스를 하는 데 익숙하다.”, “돈을 주고 섹스를 하는 것은 아이들의 가족을 돕는 일이다”, 등),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험’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자신이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S.에 대한 수사는 방송 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5년 9월 체포는 즉시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그의 친구 중 하나가, 그 소아성애자가 자신의 ‘예술적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통의 녹음된 전화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그는 1심에서 14년의 실형과 200,000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S.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찍은 370장 남짓의 사진과 9개의 비디오테이프를 찾았다. 그는 그것들을 팔지 않았다. 2심과 3심은 열릴 예정이다(2009년 기준). 이는 이탈리아가 Law 269/1998을 적용시켜 형을 선고한 두 번째 사례이다.

**필리핀에서의 독일인**(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이 사건은 독일 검찰에 의해 묵살되었었다. 그러나 ‘Daddy Rene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기사와 저명한 독일 신문 ‘Der Spiegel’이 검찰 당국에 대한 대중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건은 재수사되었다. 현재에도(2009년 5월) 여전히 사건은 조사 중이다. 좋은 소식은 유명한 독일의 TV 채널이 독일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이 사건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에서 2004년, 독일 출신의 H.는 학교를 보내주고 장학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7세에서 13세의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해왔다. 돈은 Puerto Galera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비공식 재단에 기부되었다. 학교 교장이 아이들 중 몇몇이 요로 감염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H.의 성적 학대는 밝혀지게 되었다. 검사 결과 질에 상처와 감염의 흔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진술이 수집되었다. 그 후에 H.는 11건의 개별적인 강간 사건에서 고소당했다. 이 사건에는 2명의 남자가 추가로 연루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필리핀 감옥에서 자살했다(국적은 알려지지 않았고, 영어를 사용했다).

2004년 그는 체포되었지만 200,000 페소(약 3,000 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필리핀을 빠져나갔다. 2004년 말, 경찰은 H.를 찾는 데 실패했고 독일 법원은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8년 5월, 한 호주 시민이 필리핀에 있던 중 시민단체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H.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이 사실을 시민단체에 알렸다. 2008년 4월 예심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고 말았다. 검사는 11명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H.가 자신들을 성추행했다고 기소했지만 나중에는 그 진술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남아 있는 네 명의 희생자들의 증언은 기소를 할 만큼 자세하지 못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어린 나이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다행히도 언론의 관심은 독일 당국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만들었다.

**감비아에서의 네덜란드인**(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1995년 4월에서 1997년 1월 사이에 64세의 네덜란드 남성은 감비아의 Fajara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12살에서 16살 되는 소녀들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그는 성관계를 나누었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 때문에 네덜란드 당국은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남성에게 1.5년에서 2.5년 정도 되는 짧은 형을 선고하는 데에는 1997년으로부터 7년이 걸렸다.

네덜란드 시민단체 Terre des Hommes와 ECPAT 감비아 지부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 덕분에 이 사건은 네덜란드 TV에 보도될 수 있었다. 네덜란드 방송은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언론의 관심은 네덜란드 의회에 대한 청문회로 이어졌고, 이는 곧 법무부와 경찰이 더 활발한 수사를 하도록 만들었다. 네덜란드 경찰의 조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감비아 경찰 및 다른 관계자에게서 수집한 정보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비아 경찰은 조사에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지 않았다.

2004년 네덜란드 법원은 용의자에 대해 30개월의 실형과 2년의 보호관찰 형을 선고했다. 형벌은 오랜 기간 동안 21살이 안 되는 소녀들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가한 죄로 인해 내려졌다. 선고와 함께, 법원은 피고가 일전에 기소되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과 구금형이 그의 나이와 육체적 상태에 비추어 가혹하다는 점을 참작하였음을 밝혔다. 법원은 또한 입증된 사실이 1995년 4월 3일에서 1997년 1월 1일까지의 일로, 시일이 다소 지났다는 점도 참작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7. 시민단체가 결정적으로 개입한 사례**

시민단체는 국가의 눈과 귀가 되어 준다. 시민단체는 아동 성매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대변해준다.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에 아동 성매매 사건의 많은 부분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시민단체는 때로 경찰, 검사, 언론, 일반 대중과 정치인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래의 사례들은 시민단체의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캄보디아에서의 독일인**(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아동 성착취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캄보디아에 지부를 운영하는 프랑스 시민단체인 Action Pour Les Enfants(APLE)는 거리의 아이들로부터 독일인 성관광객(Ohms, 47세)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는 독일 남부에서 온 뮤지션이었고 에이즈 감염자였다. Ohms는 본국에서 아동 성학대와 관련하여 적어도 5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1994년부터 그는 성학대와 음란물 소지죄로 인해 여러 번 징역을 치러왔다. 마지막으로 2006년 여름에 복역을 한 상태였다. Ohms는 곧 풀려났고, 그는 교도관에게 자신은 독일을 떠날 것이며 경찰에게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동성애적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동남아시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여름 석방되자마자 Ohms는 태국으로 날아갔지만 입국거부 당하였다. 교도관이 독일 당국에 연락을 하였고, 독일 당국이 캄보디아 정부에 연락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독일로 송환되었고 여권을 압수당했다. 그러나 용의자는 덴마크 위조 여권을 가지고 Bali와 Kuala Lumpur을 걸쳐 캄보디아로 들어가려 했다. 2007년 2월, Ohms는 여권위조죄로 체포되었고 14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 7월에 있었던 2심 재판에서는 6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동시에 적어도 다섯 명의 아이들을 에이즈에 감염될 위기에 처하게 함으로써 가한 성적 학대와 상해 치사죄가 인정되어 무기예방구금을 선고 받았다.

처음에 독일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8명의 아이들을 소환했다. 아이들 중에는 직접적인 피해자도 있었고, 학대를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다. 그들은 APLE 직원과 동행했고 독일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사람과 함께 생활했다. 독일에 있는 동안 소년들은 독일에서의 체류를 좋은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유롭게 머물 수 있었으며 본드를 흡입하지 않아도 됐고,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캄보디아로 귀국한 후에 6명의 아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사회 복지사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기로 했다. 아이들 중 2명은 프놈펜에 있는 약물치료센터에 갈 수 있었음에도 결국 본드에 중독되고 (그들의 어머니에 의해)거리에서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두 소년은 독일에서 캄보디아로 돌아온 후에 APLE의 협력 단체에 의해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교육받게 되었다.

**인도에서의 오스트리아인**(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2007년 11월, Linz에서 온(거주지는 Vienna) 39살의 실직자는 보호관찰 없이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그가 비슷한 전과를 두 번이나 가지고 있고, 한 번에 약 7개월의 기간으로 인도를 여러 번 여행했음을 알았다. 목격자들은 그 실직자가 어린 소년들을 매주 몇 번씩 자신이 묵는 호텔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Calcutta에 있는 자선 단체의 자원봉사자인 두 명의 목격자(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인, 프랑스인)는 2006년 3월 그 오스트리아인이 6살에서 9살 되는 어린 소년을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두 명의 목격자는 피고를 따라갔고 호텔 창문을 통해서 그가 소년에게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호주 출신의 목격자는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이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어떤 단체에서도 협력해주지 않았다. 그는 결국 ECPAT에 연락했다.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경찰 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ECPAT 오스트리아, ECPAT 영국과 ECPAT 국제지부의 협력으로 영국 경찰은 결국 그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NGO가 그들의 지부를 통해 책임 당국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결국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어왔던 절차가 속도를 올리도록 도움을 주었다.

**부록: 해외 아동 성 관광 세부 사례집**

**필리핀에서의 독일인**

본 사례는 독일 당국의 기소에 의해 결과적으론 기각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유명 잡지에 실린 기사가 검찰 당국에 대한 여론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례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었습니다.

본 사례엔 11명의 필리핀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관되었습니다. 모든 아동 피해자들이 필리핀의 산 안토니오(San Antonio)에 자리 잡은 빌린 별장에서 운영되었던 미등록 재단의 창립자였던 독일인 H가 제공한 장학금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H는 푸에르토 갈레라(Puerto Galera)의 어린이들을 도울 기금 조성을 자국민들에게 촉구하는 데에 자신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기부자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리라곤 꿈도 꾸지 못하는 채로, H는 이 기금으로 아이들에게 장학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아이들을 성추행하였습니다. H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지원 계획엔 마닐라로의 수학여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건의 성적 학대가 이 수학여행 도중 아이들이 마닐라에 자리 잡은 H의 거주지에서 자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산 안토니오에 자리 잡은 H의 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은 7세에서 13세까지의 소녀들이었습니다. 성적 학대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년에 걸쳐 가해졌습니다. 필리핀 비정부단체가 피해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법조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6명의 어머니들이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비정부단체에게 알려진 아동 성 착취 관련 의학 기록이 14명의 아동들을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아이들만 강간 피해자로서 본 사례를 고소하였습니다.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학교 교장이 몇몇 아이들의 요로 감염 사례 보고서를 수합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뒤 이은 의학적 검사를 통해 질 파열과 그로 인한 감염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11개의 개별 강간 피해 사례가 H를 피고 삼아 법정에 고소 조치되었습니다. 2명의 남성들이 추가적으로 연관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은 필리핀 감옥에서 자살하였습니다. (국적 불명, 영어 구사자)

2004년 4월, 예비 조사가 끝난 이후, 민도로 오리엔탈(Mindoro Oriental)의 지방검찰청은 기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4년 5월에 민도로 오리엔탈 지방 법원에 의해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또한 20만 페소에 상응하는 보석금을 지불할 경우엔 구류 조치에서 해방시킨다는 단서를 달았고 그리하여 H는 체포와 구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H는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6개월 후, 2004년 11월에, 지방 법원은 체포 영장 회수를 명령하였는데 이는 사례의 ‘기록’을 위함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같은 지방 법원이 H 같은 자를 야기한 경찰의 실패를 근거로 본 사례의 최종 기록 보존 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2007년 여름, 마닐라에 자리 잡은 독일 대사관은 필리핀 경찰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았습니다.

2008년 5월, 한 오스트리아 시민이 아동 권익을 옹호하는 비정부단체의 웹사이트를 살펴보다가 필리핀에서의 H의 사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이름의 남자가 그의 아내의 관할인 캠핑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상기하였고 이를 필리핀 비정부단체에 알렸습니다. H는 캠핑 구역에서도 11세의 소녀를 성추행하였음이 알려졌고 그로 인하여 오스트리아 경찰로부터 경고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H는 오스트리아 학교의 건널목 안전 당번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절차는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샤펜부어크 검찰청 Staatsanwaltschaft Aschaffenburg) 2008년 4월, 검찰청은 증거부족으로 기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70 Abs 2 StPO) 이 결정은 11명의 아이들의 증언에 기초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11명의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처음엔 H를 그들을 성추행한 자로 지목했으나 이후 그들의 진술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의 증언들은 충분히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어린 연령을 이유로 그들의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는 유력 잡지 슈피겔에 ‘아버지 르네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면서 심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명백히 독일 비정부단체의 지원을 받아 본 사건의 기각 조치에 반대한 피해 아이들의 변호인의 직무 수행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 조치들이 전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2009년 5월) 유력 독일 TV 채널이 독일 비정부단체의 조력을 받아 H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H는 학교에서의 건널목 당번 직위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 본 사례의 결론들

○ 검찰 당국은 사건들이 ‘충분히 심각하지’ 않아 보일 경우엔 기소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H는 그의 손가락을 소녀의 질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아동 피해자들의 증언들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동 피해자들이 그들의 모국에서 했던 증언들이 법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기 위해선 독일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폭로한다는 건 곧 위험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피해자들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 유력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성 및 그를 통한 압박이 기소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비아에서의 네덜란드인**

1995년 4월부터 1997년 1월까지 64세의 네덜란드인이 감비아(Gambia)의 파자라(Fajara)를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정기적으로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연령대인 소녀들을 그의 호텔 객실로 초청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그에 대한 징벌 노력은 7년을 소진한 끝에 불과 1.5~2.5년의 징역형이라는 초라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네덜란드 비정부단체 테르 드 옴므(Terre des Hommes)와 ECPAT의 협력단체인 감비아의 아동보호연대(Child Protection Aliance)가 본 사례에 대한 주요 임무들을 맡았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이 이 사건이 네덜란드 TV에서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네덜란드 국영 텔레비전이 성적 착취가 발생한 장소의 사진을 몇 차례 방영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들도 피해자들의 친척들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집중된 시민들의 관심이 심지어는 네덜란드 의회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 의심으로까지 이어졌고, 이에 압력을 받은 법무부와 경찰이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의 조사는 피해자 한 명의 진술과 감비아 경찰 및 여타 당국자들로부터의 증거채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감비아 경찰은 조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조사과정 상 드러난 실수들 때문에 본 사건에 대한 기소의 성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스웨덴에서 조사받은 피해자의 경우엔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조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우선 피고 측 변호인에 의해 조사받았었으며 또 변호인에게도 피해자를 심문할 기회가 주어졌었음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조사자들이 가진 인터뷰의 속기록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익도 존중한 공정 재판의 원리 속에서 조사받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그에 대한 기소 혐의가 대중에 공개된 것으로 인하여 용의자로서 지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과정 속에서 검찰은 변호사들을 위한 잡지인 ‘오포르투운(Opportuun)’에 실린 기사문에 협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가 피고인의 법익을 무시했거나 공정 재판의 원리를 무너뜨릴 소지는 없었다며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04년에 네덜란드 법원은 용의자인 피고인에게 30개월 징역형과 2년의 보호관찰기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의 선고는 21세 미만의 소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성적 착취 혐의에 근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피고인이 기존에 고발당할 만한 죄를 지어 전과가 있는 사실이 없고 또 구금이 그처럼 노년에 접어든 자의 육체적 조건엔 힘겨울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또 1995년 4월 3일부터 1997년 1월 1일까지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증명되어 설명된 사실들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성적 착취가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감정이 손상되며 또 종종 다양한 육체적 문제들을 겪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의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16세 미만의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어린 나이의 소녀들은 부적절한 그녀들에 대한 지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자신의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적 존엄을 침탈하였던 것입니다.

- 본 사례의 결론들

○ 비정부단체의 노력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긴요합니다.

○ 감비아 경찰에겐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고 또 협조하지 마십시오.

○ 여러 나라가 관련되었을 경우, 조사과정은 그저 시간낭비에 불과합니다.

○ 1.5~2.5년 징역형, 16세 미만 소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적으로 착취한 대가.

**캄보디아에서의 독일인**

본 사례에서는 캄보디아 비정부단체가 거리의 아이들로부터 독일인 관광객(옴즈[Ohms], 47세)이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독일 북부 출신 음악가였던 그는 에이즈 양성반응자였으며, 그의 모국에서도 적어도 5차례의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4년부터, 옴즈는 성폭행 및 음란물소지죄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형 집행은 2006년 여름에 만료되었습니다. 그의 석방 직전에, 그는 간수에게 ‘나는 그가 소년들에 대한 성적지향을 드러내어도 경찰의 방해를 받지 않을 동남아시아에서 살기 위해 독일을 떠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수는 옴즈에게 그의 목적은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형사상 처벌 가능한 행위임을 납득시키고자 했고 또 그에게 역외적용법률(extraterritorial legislation)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가수는 독일 범죄자 조사국(German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에 옴즈의 의도를 알렸습니다.

2006년 여름, 그의 석방 이후, 옴즈는 태국으로 향했으나 독일 연방 (對)범죄 경찰국(German 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Bundeskriminalamt)이 태국 당국자들에게 경고했기에 입국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독일 여권은 강제 수용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조 덴마크 여권을 이용하여 발리(Bali)와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를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해안의 휴양지인 시하눅빌(Sihanoukville)에서 그는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 비정부단체로서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의 성적 착취에 반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악씨옹 뿌흐 레 장팡(APLE: Action Pour Les Enfants)이 본 사례에 대한 개입을 시작하였습니다. APLE는 옴즈와 접촉했던 거리의 아이들로부터 힌트를 얻었습니다. APLE 스텝들은 그의 취향인 소년들을 찾아 그의 이륜차를 타고서 시하눅빌을 가로지르는 옴즈를 2007년 1월과 2월에 걸쳐 관찰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옴즈는 11세에서 13세에 걸친 연령대의 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중 한 명은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옴즈는 이민국과 인신매매반대 및 청소년보호 유닛(Anti-Human Trafficking and Juvenile Protection Unit)의 합동 작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한 명은 독일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스칸디나비아 인이었던 두 연락책 경관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당국자들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독일인 연락책 경관은 추방 절차 진행을 위해 캄보디아로까지 찾아 왔습니다. 옴즈의 추방은 아동 성 착취에 근거하지는 않았고 위조 여권 사용에 근거하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옴즈는 위조 여권 사용죄로 14개월 복역형을 선고받고 2007년 9월부터 복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7월의 2심 절차가 시작하고 나서, 지역 고등 법원 그리고 독일 항소 법원(Oberlandesgericht)이 옴즈에게 적어도 5명의 소년들에 대한 의도적인 에이즈 감염 전파를 시도했음을 근거로 성적 착취 및 육체 상해 혐의를 부여하였습니다. 옴즈에 반하는 증언을 한 피해자들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법원은 처음으로 피해 아동들뿐만 아니라 성적 착취 현장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아이들도 법정에 소환하여 총 8명의 아이들을 소환하였습니다. APLE 스텝도 소환되었습니다. 1996년에만 단 한 번 이전에 필리핀 아동 피해자가 독입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걸쳐서, APLE 스텝이 동행하여 캄보디아에서 온 3개 그룹의 아이들이 옴즈에 반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독일에 도착하였습니다. 법원이 알선하여 독일의 키엘(Kiel)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 출신 거주자들이 독일에 머무는 동안의 아이들의 취식과 거주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외부에 대한 공개 없이 아동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일에 머무는 동안 모든 소년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본드흡입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또 음식이 많은 독일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온 이후 여섯 소년들은 그들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으며 또 사회사업가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2명의 소년들이 본드흡입을 그만 두었고, 또 그들의 어머니가 독려했던 길거리 구걸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프놈 펜(Phnom Penh)에 있는 마약류 피해 치료 센터에 갈 수 있었습니다. 두 소년들은 독일에서 돌아간 이후 APLE와 협력하는 파트너에 의해 쉼터를 제공받고 또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25일, 옴즈는 6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역외적용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5 par. 8 Penal Code) 그에 대한 형의 선고 이후, 유죄 피선고자는 평생 예방구금조치(preventive detention)를 적용받게 됩니다. (‘Sicherungsverwahrung')

- 본 사례의 결론들

○ 비정부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APLE가 조사하여 정의를 구현하였습니다.

○ 역외적용법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이 알선해준 덕분으로, 몇몇 캄보디아 출신 피해 아동들이 피해자 겸 증인으로 독일 법정의 진행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돌려주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과 지원을 제공해주십시오.

○ 옴즈는 많은 사람들의 강한 헌신과 훌륭한 협력 덕분에 비로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법 집행 기관들과 비정부단체가 다함께 협력한 덕분이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오스트리아인**

2007년 12월 18일, 비엔나에 거주 중이던 린츠(Linz) 출신의 무직자가 보호관찰을 동반하지 않는 2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유사한 전과가 있는 그가 한 번 여행할 때 몇 달씩 반복적으로 인도로 여행해왔음을 공판 과정에서 고지 받았습니다. 증인들은 그가 매주 수차례 어린 소년들을 호텔 객실로 데려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영국에 거주 중이던 호주인과 캘커타(Calcutta)의 자선 단체에서 자원봉사 중이던 프랑스 시민으로 구성된 2인의 증인들이 2006년 3월에 해당 오스트리아인이 6세~9세가량의 소년과 그의 호텔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두 증인들은 피고인의 뒤를 밟았고 곧 그가 소년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호텔 창문을 통해 목격하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호주인 증인은 사건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호텔 주인으로부터 범행자가 매주 두 차례 혹은 세 차례에 걸쳐 소년들을 데려왔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피고인 소아성애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그는 그가 인도의 문화를 좋아해서 인도를 여행하고 있었다며 유죄평결에 항소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기나긴 치료요법 이후 아이들을 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ECPAT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은 2006년 초에 해당 오스트리아인이 인도 호텔에서 아이들과 성행위하고 있던 것을 목격했었음이 추후에 밝혀진 영국인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모두 소진되어, 마침내 ECPAT에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른 어떤 단체나 대리인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중에 오스트리아 경찰은 영국 경찰을 통해 영국인 증인이 공식적인 증언을 할 각오가 섰는지를 영국인에게 물어왔습니다. 증인은 그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경찰이 그들이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 경찰과 필요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서 서로의 연락을 지속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2007년 1월, 누구도 영국인 증언 희망자와 접촉하지 않았었고, 그가 그 스스로 오스트리아 경찰과 접촉하려 시도하였음에도 실패한 이후, 재차 ECPAT 인터내셔널에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2007년 1월, ECPAT 오스트리아 지부가 본 사례에 대한 정보를 ECPAT International을 통해 전해 들었고 또 해결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ECPAT 오스트리아 지부는 사건이 비엔나(Vienna)말고 오베뢰스테라이히(Oberösterreich)에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의자의 실주소지가 그의 고향 지역인 오베뢰스테라이히 말고 비엔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엔나 검찰이 2007년 1월부터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조사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은 판사와 접촉하는 것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마침내, 2.5주가 지난 뒤에야 ECPAT는 그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과 ECPAT는 우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경찰 당국도 영국인 증언희망자가 하고자 하는 증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1월, 검찰이 영국 당국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Rechtshilfeansuchen) 이는 영국 경찰이 오스트리아 당국을 대변하여 증인의 진술을 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ECPAT 오스트리아 지부는 ECPAT 영국 지부에 영국의 각도로 사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2007년 4월, 증인이 영국 경찰에 의해 증언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ECPAT 오스트리아 지부와 영국 지부의 연결과 개별 국가 당국자들과 개별 지부들의 연결이 매우 중요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마침내 적어도 이미 진행된 절차의 진행 속도를 증진시키는 데엔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증인들이 오스트리아 법원 공판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 채집 작업의 두 조건들의 충족이 관건이었습니다.

1)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위에 묘사된 바와 같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2) 인도와 인도 당국자들로부터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

절차 진행이 느렸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비엔나 인터폴과 뉴델리(New Delhi) 인터폴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델리 인터폴이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단 사실입니다. 비엔나 인터폴이 정보를 받았을 때에만, 그들은 이 사안에 대해 특별히 책임을 맡고 있던 비엔나 지방 법원에 해당 정보를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ECPAT 오스트리아 지부는 오스트리아 인터폴이 무척 적극적이었고 또 인도 당국자들이 증거를 보전하고 사안을 조사하여 그들을 돕게 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도 당국자들과 관련된 몇몇 국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별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변화를 가져온 사실은 바로 한 오스트리아 경찰이 우연히 다큐멘터리 관련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 뉴델리의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관은 심지어 범죄 담당 부서 소속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이었고 또 사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인도 당국자들과 (성적 착취가 일어난 지역이라 알려진 캘커타 지역 경찰 부서와 함께) 오스트리아 인터폴의 정도에 근거하여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경찰들과 함께 캘커타로 가서 술집과 매음굴 구역 속 작은 호텔인 범죄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호텔 소유주와 스텝들을 인터뷰하였고 또 오스트리아 경관은 영국인 증인이 목격했던 호텔 객실을 정확한 사진 다큐멘터리에 담아주었습니다.

봄에 걸쳐 인도로부터의 서류와 증인의 진술이 검찰에 의해 조사되었고, 법원이 용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사례의 결론들

○ 인도의 법 집행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협조 없음.

○ 여러 국가가 연관되었을 경우, 각종 절차들은 복잡하며 또한 시간 낭비입니다.

○ 중간 시기(intervening time)에 해당 오스트리아인이 휴일에 인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의 행위를 재개했을 공산이 큽니다.

○ 최초로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외국인 증인을 초청하였습니다.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증인과 그의 친구가 인도에서 비엔나로 항공편을 통해 들어왔는데, 둘 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자선단체에서 몇 달간 일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태국에서의 영국인** (출처: 발신자 반송[*Return to Sender*], 2008)

77세의 마우리스(Maurice)는 8세의 소년을 성적으로 사취한 혐의로 2008년 3월에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마우리스는 아동 성폭력 혐의로 6차례나 체포된 바 있었으며 또 한 사건에 임해서는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2007년 3월에 마우리스는 8000파운드의 보석금을 내고서는 9세와 11세의 태국 소녀들을 성적으로 사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2001년에 이 사안으로 인하여 체포되었을 때 이미 두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항소를 준비하며 보석 상태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991년에 마우리스는 태국 부부에게 800파운드를 주고 그들의 딸과의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소녀는 몇 주 뒤 도망쳤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처럼 태국에서도, 연장자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었고, 그는 이를 이용하여 소녀를 되찾았습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태국에서의 마우리스의 기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패와 뇌물이 언제나 외국 당국자들을 조사 하에 놓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ECPAT 영국지부는 또한 영국 당국자들이 대체 왜 그 동안 범죄자가 영국과 태국 양측 모두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지지부진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마우리스는 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인이었으며 그는 태국을 영국을 자유자재로 떠나고 또 영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으며, 어디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국에 고용된 상태도 아니었고, 또 그는 심지어는 아마도 영국 정부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영국 당국자들은 외국 경찰력이 아동의 성적 착취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소모하며 훈련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공적은 환영되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 영국의 이 문제에 대한 주요 전략이라 생각하고 마는 것은 곧 가난, 부패, 결탁, 그리고 권력이 그저 단순히 훈련 워크숍에 출석한 일부 개인들의 참여로 줄어들지는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폭력의 풍광을 무시해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ECPAT 영국지부는 영국 대사관들과 영사관들의 역할에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또 영국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이 왜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체포 국면이 발생할 때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긴밀한 공조를 취한다는 지속적인 기조를 지니고 있지 아니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자들과 여타 당국자들이 그들의 제한된 자원을 영국인 범법자들을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데에 사용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처사이며 또한 아동 보호에 대한 국제 공조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우리스가 영국에 있었다면 그는 영국 성범죄자 명부(UK Sex Offenders Register)에 등재되었을 것이며, 영국 공공보호협정(MAPPA: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체계의 엄중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 하에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ECPAT 영국지부는 영국 정부에게 해외에서 아동들을 학대하는 영국인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발견하고, 또 발생 범죄를 다룰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외에서 자국민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그저 ‘그 곳’의 정부가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는 이데올로기의 전회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매우 힘겨운 경구(mantra)의 실천은 반드시 우리들에 의해 계속 시도되어야 합니다.

- ECPAT 영국지부의 아동 성 관광에 대항한 투쟁에 대처하는 방도에 관련한 추천사항들:

1. 관련 국가들과 더 강력한 쌍무적 협조 협정을 맺으십시오.

2. 다른 국가의 법 집행 기관 근무자들과 함께 연합 조사팀을 구성하십시오.

3. 유죄 피선고자를 영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형의 선고 이후 성 범죄자 명부에 등재되도록 할 목적으로 강제송환하고 또 연행하기 위해 외국 정부들과 협정을 맺으십시오.

4. MAPPA 모델에 따른 즉각적인 리뷰 결과물이 다른 국가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실들의 맥락을 보다 많이 내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해주십시오.

5.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여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법규(FTOs: Foreign Travel Orders) 활용 및 그 효력에 대해 즉각적 리뷰를 실시하시거나 다른 모델을 통해 이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